

2022 부산국제모터쇼 참가신청서

참가업체

회사명	국문 :	영문 :
주소		
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
담당자	성명 (Name)	부서 및 직위 (Title & Dept.)
연락처	전화 (Tel)	휴대전화 (Mobile)
	이메일 (E-mail)	팩스 (Fax)
홈페이지		
전시품 및 제품 설명		

전시면적 신청 및 참가비

구분	단가(부가세 별도)	전시면적	금액	부가세	합계
독립부스	170,000원/m ²	()m ²	원	원	원
조립부스	2,400,000원/부스	()부스	원	원	원

※ 완성차업체는 100m² 단위로 신청, 완성차업체 이외의 참가업체는 최소 36m² 이상 신청하며, 9m² 단위로 추가 신청 가능함.

납부처

계좌번호	부산은행 320-01-000111-6	예금주	(주)백스코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

※부대설비(전기, 급배수 등) 사용 신청은 추후 배포될 참가업체 매뉴얼과 함께 안내 예정

아래 전시회 참가규정에 동의하고, 2022부산국제모터쇼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회사명 :

대표자 :

(인)

2022 부산국제모터쇼 참가규정

제1조 | 용어의 정리

- “전시자”라 함은 본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,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“전시회”라 함은 2022 부산국제모터쇼 (BIMOS 2022)를 말한다.
- “주관자”라 함은 BIMOS 2022 사무국을 말한다.

제2조 | 전시면적 할당

- 주관자는 전시면적 규모, 신청일자,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면적 및 위치를 할당한다.
- 전시자의 참가신청 면적이 주관자가 확보한 공간을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관자가 전시자의 신청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조 |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

신청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APEC로 55 소재 BIMOS 2022 사무국에 이메일,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 총액의 50%를 납입하고, 잔금은 조기신청인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, 일반신청인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| 참가비

기본참가비는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독립부스일 경우 170,000/m², 조립부스일 경우 부스당 2,400,000으로 한다.

제5조 | 참가비 내역

참가비에는 전시장소, 24시간 외곽경비, 통로청소, 홍보 등이 포함된다.

제6조 | 설치 및 철거

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
제7조 | 주관자에 대한 정보제공

전시자는 주관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 | 전시장 관리

-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된 전시면적을 벗어날 수 없으며,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9조 | 보험, 보안 및 안전

-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.
- 전시자는 전시 스탠드 및 전시품의 도난, 훼손 또는 여하한 종류의 개인상해에 대하여도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주관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-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.

제10조 | 현장판매

- 현장에서 판매활동(직접판매, 간접판매)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- 단, 주관자가 별도로 정한 장소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, 부득이 판매활동을 원할 시엔 주관자에게 사전 확인을 받고 이에 수반되는 고객사후관리, 세금 등의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.

제11조 | 해약 및 환불

-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 취소, 및 규모 축소를 원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.

취소 시기	위약금
~ 2022.3.31	전체참가비 또는 축소 분의 30%
2022.4.1~2022.5.30	전체참가비 또는 축소 분의 50%
2022.6.1~	전체참가비 또는 축소 분의 100%

- 주관자는 전시자가 전시회 매뉴얼을 위반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치 않을 경우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1항의 기준에 따라 해약금을 차감하여 이자없이 환불한다.
- 1항의 취소시점은 전시자의 취소 신청 공문서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제12조 | 전시회 변경 및 취소

- 주관자가 천재지변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전시회를 취소,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 주관자는 이러한 사유로 전시자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주관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시회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주관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전시회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전시자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제13조 | 보충규정

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,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, 또한, BEXCO의 제규정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4조 | 분쟁의 해결
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